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4-111
------	--------

제출년월일 : 2014.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고압가스 판매소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스사업 등”을 규정(안 제2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

나.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세부사항을 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허가대상	규정사항	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업소의 부지,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2배 이내로 규정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사업소의 부지, 용기보관실, 사무실, 부대설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사업소의 부지, 용기보관실, 사무실	
고압가스 판매소	사업소의 부지, 용기보관실, 사무실, 부대설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4. 10. 2. ~ 10. 22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1부.
-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허가요건)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공통사항)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나. 안전거리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시설기준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나. 용기보관실 다. 사무실 라. 부대설비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나. 용기보관실 다. 사무실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기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별표 2]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공통사항)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고압가스 판매소

시설기준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라. 부대설비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마. 안전거리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예산발생 사유 없음)

3. 미첨부 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필요치 않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
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를 생
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환경과 유화철
연 락 처	02-3153-9282